

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해촉)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중 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사무를 처리한다.”를 “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”로 하여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해촉)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27조의 제목“(회의)”를 “(회의 등)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